

신변보호사(경호사) 자격제도 도입방안

김태환[†] · 박대우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 혜천대학 경찰경호과
(2004. 10. 29. 접수 / 2005. 5. 10. 채택)

A Study on Introduction Plan of the Private Security Guard System

Twe-Hwan Kim[†] · Dae-Woo Park

Department of Guard and Security, Yongin University
(Received October 29, 2004 / Accepted May 10, 2005)

Abstract : According to the current record of Private Security in Korea, more than 110,231 private security guards and around 2,213 security guard associations are engaged in the private security industries. However, there is no a professional license for the private security. In order to be provided a high quality service from private security industries, the security guard should be required his/her professional qualification which can be upgraded by establishing a professional license system. For introducing the license system, the government and security guard associations need to support the suitable training program including curriculum and method, and all associations related to the private security have to require people involved in any kinds of private security matters to complete obligatorily some educational training programs. And also, to complete a college should be the minimum requirement.
Key Words : private security, security guard, professional license

1. 서 론

민간경호·경비산업의 중요성 및 필요성은 사회적으로 많이 인식되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는 약 2,213개의 경비업체와 110,231만 명이상의 민간경비원이 민간경비산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한다¹⁾. 그러나 민간경호·경비관련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국가의 공인을 받지 않은 민간단체가 자격을 나름대로 만들어서 국가자격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것처럼 선전하고, 이러한 자격의 취득 후 고소득 및 안정된 직업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일반인들을 현혹시켜, 자격취득을 위한 수강료 및 교재 대금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국가로부터의 공인된 한국 민간경호·경비관련 자격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민간경호·경비산업의 성장과 함께 자격증을 활용한 경비원의 도입논의가 되어오고 있다. 이러한

자격증을 가진 민간경호·경비원은 그 동안 문제시 되어왔던 민간경비원 및 경호원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국내에서는 경비원을 교육·감독하는 제도인 경비지도사제도가 1995년 12월 30일 경비업법(법률 제5124호)의 개정으로 규정되어 1997년 제1회 검정을 시작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 민간경호·경비원의 면허증 또는 자격증제도는 없다. 우리나라의 경호·경비원은 결격사유²⁾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면 누구나 경호·경비원이 될 수 있으며, 신임교육과 직무교육만 받으면 된다.

특히 이 경비지도사 자격증은 경호·경비관련 학문영역에 속하지만 신변보호, 기계경비 안전관리, 의전비서 등 여러 가지 학력수준이나 능력 혹은 경력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자격증 제도이다³⁾.

아직까지도 민간경비업체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경비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비원의 자질사비, 낮은 처우 등은 민간경비업의 활성화와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⁴⁾. 경비원의 낮은 보수는 직무만족도를 저해하고, 기타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이직률이 높아 민간경비산업의 안정성과 발전을

[†] To whom correspondence should be addressed.
taehwan@yongin.ac.kr

저해한다. 사회안전이라는 국가적 중요성에 기인하여 공공의 이익보호 차원에서 사회안전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같은 전문성 확보와 관련된 제도가 ‘자격증’ 제도라고 할 수 있다⁵⁾.

본 연구에서는 범죄예방적 측면에서의 기능이 점점 증대되어가는 민간경호·경비의 한 분야인 신변보호 자격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2. 국내 민간경호·경비관련 자격제도 현황

우리나라는 1995년 12월 30일의 제5차 경비업법 개정에 의해, 경비원을 지도·감독·교육하는 경비지도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경비지도사 제도는 1994년 경찰청 부설 치안연구소의 연구 프로젝트에 의해 제안된 제도이다. 7개월간에 걸쳐 실시된 연구 프로젝트에서는 한국 경비업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경비업계의 발전을 위한 대책방안을 제안하였다.

실제로 경비지도사 자격이 신설되고 시험과목이 결정되면서 민간경비분야에 변화가 일어났다. 경비지도사 관련 수험서가 발간되고 그 동안 관심의 사각지대였던 민간경비 분야가 일반인의 관심분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다⁶⁾.

국가는 경비지도사를 관리함으로써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체 경비원들을 통제하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년 6월말을 기준으로 선임된 경비지도사의 수는 2,604명으로 전년도 하반기 2,350명에 비해 10.8%가 증가하였다.

3. 신변보호사(경호사) 자격제도 도입방안

신변보호사(경호사) 자격제도 도입방안은 한국 산업인력공단에서 2002년에 발행된 ‘국가기술자격

Table 1. Senior Security Instructor

구분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선임인원	2,604	1,373	205	137	90	31	284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선임인원	34	42	125	42	106	54	74	7

Table 2. Contents of Qualification Category

구분	내용
수행직무	해당 직종에 대한 일반적인 업무영역을 각종 직무분 석자료를 기준으로 작성 소개함으로써 자격분야의 직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도모
해당 자격종목	해당 직종에 대한 일반적인 업무영역을 각종 직무분 석자료를 기준으로 작성 소개함으로써 자격분야의 직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도모
자격취득요건	등급별 검정기준, 응시기준, 자격취득방법, 시험면제 사항 등을 소개함으로써 자격취득방법을 쉽게 파악 할 수 있도록 기술
필기시험	필기시험에 대한 시험과목, 출제기준, 시험방법, 시험범위를 제시 (출제기준의 구체적인 세부항목은 제시하지 않음)
실기시험	종목별로 실기시험에 대한 출제기준과 구체적인 시험방법을 설명

통계연보⁷⁾의 자격항목을 기준으로 구성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다음의 Table 2와 같다.

3.1. 수행직무

경비업법에서 정하는 경비업무는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그리고 특수경비업무 5가지이다. 이 중 신변보호사(경호사)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신변보호업무⁸⁾인 경호업무를 행한다.

3.2. 자격종목

경비업법에서 정하는 경비업무는 인적대상을 보호하는 호위와 물적대상을 보호하는 경비로 나누어진다. 신변보호사(경호사)자격제도는 인적대상을 보호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자격종목을 신변보호사(경호사)로 정의한다.

3.3. 자격취득요건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들은 다음과 같다.

3.3.1. 검정기준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3등급으로 세분화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른 검정기준은 다음의 Table 3과 같이 한다.

Table 3. Standard of Probation

종목	검정기준
신변보호사(경호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Table 4. Qualification

구분 (공통)	응시 자격 요건
1급	2급 취득 후 경호경비업무 경력 5년 이상인자
2급	대학교졸업(예정)자로 자격검정과목 이수자 대학원에서 자격검정에 필요한 공통필수관련 과목 이수자 대학교졸업 후 경호경비업무 경력 2년 이상인자 전문대학교졸업 후 경호경비업무 경력 4년 이상인자 3급 자격 취득 후 경호경비업무 경력 2년 이상인자
3급	전문대학교졸업(예정)자로 자격검정과목 이수자 전문대학교졸업 후 경호경비업무 경력 1년 이상인자(비전공자) 고등학교졸업 후 경호경비업무 경력 2년 이상인자 대학교에서 자격검정 전문선택영역 관련 학과(전공)졸업자

3.3.2. 응시자격

자격증에 대한 응시자격은 다음의 Table 4와 같다. 등급을 세분화(3등급)하여, 그에 따른 응시자격 요건을 제시하였다.

3.3.3. 자격취득방법

3급 자격증의 경우 최소학력기준은 고졸이나 경호·경비업무 경력을 최소 2년 이상인 자로 정한다. 전문대나 4년제 대학 경호·경비관련학과 졸업생 중 검정과목을 이수한 자가 응시가능 하도록 한다.

3.3.4. 시험면제사항

시험에 관한 면제사항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비지도사제도와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 채용시험과목을 기준으로 구성하였다.

3.4. 필기시험

3.4.1. 검정과목

검정과목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비지도사제도와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 채용시험과목을 기준으로 구성하였다. 내용은 Table 7과 같다.

Table 5. Method of Qualification Acquisition

종 목	검정 절차	합격기준	공통사항
신변 보호사 (경호사)	필기 실기 및 면접	- 필기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시험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면접시험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 인원이 초과되는 때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함

Table 6. Category of Examination Exemption

구 분	면제사항
신변 보호사 (경호사)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당해 필기시험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받으며, 동일 등급의 다른 업무자격종목의 검정을 받을 경우 중복되는 자격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면제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 한 자, 대통령경호실법에 의한 경호원으로 7년 이상 재직 한 자, 군인사법에 의한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 한 자,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 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Table 7. Subject for Theory Probation

종 목	과 목 명
신변 보호사 (경호사)	일반상식, 법학개론, 경비업법, 경호학개론, 민간경비론, 헌법, 영어, 행정학, 형사소송법, 정보학, 경호무도, 경호실무, 테러학, 소방학, 범죄학, 응급처치법, 경호비서실무, 사격

Table 7의 과목들 중 경비업법, 민간경비론, 경호학개론, 법학개론, 소방학, 범죄학 등이 있다. 이러한 과목은 경비지도사보다 경호원 및 경비원들이 실제로 근무를 함에 있어 중요한 이론들이기 때문에 검정을 통하여 일정 수준이 되는 인원만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4.2. 검정방법

Table 8. Method for Theory Probation

구 분	검 정 방 법	합 격 기 준
1급	5개 과목의 주·객관식 필기시험	필기시험 :매과목만점의 4월이상, 전과목 평균6월이상 득점 면접시험 :불합격자에게는 다음기회의 시험에 필기 시험 면제
2급	공통필수영역의 5과목, 공통선택영역 5과목 중 3과목을 선택하여 객관식필기시험· 전문선택영역 5과목 중 2과목 선택하여 주·객관식필기시험 및 면접	
3급	공통필수영역 5과목, 공통선택영역 5과목 중 3과목을 선택하여 객관식필기시험 및 전문선택영역 5과목 중 2과목 선택하여 주·객관식필기시험 및 면접	

3.5. 실기(면접)시험

3.5.1 검정과목 및 출제기준

Table 9. Subject for Practice Probation and Standard for Presenting Problems

종 목	출 제 기준
신변 보호사	경호·경비업무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경호·경비업무에 관련되는 기본법률지식 경호·경비업무분야별 전문기술 및 지식 민간경호·경비원들에 대한 지휘통솔능력

3.5.1. 검정방법

Table 10. Method for Practice Probation

종 목	시험 방법	시험 시간
신변보호사 (경호사)	구술형면접 및 경호무도	각각 10분 이내

3.6. 교육훈련기관

민간경호·경비원자격제도 전반을 주관할 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관기관에서는 전반적인 운영과 평가 및 교육체제를 구축하여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주관기관에서는 단순한 평가뿐만이 아니라 국민에게 보다 많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정보화를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주관기관은 크게 국가기관과 민간기관으로 분류하여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공신력 및 그 체제의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으며, 상업성이 배제되고 초기의 참여도나 관심도가 높을 것이다. 반면에 민간기관의 경우에는 현장 적응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각종 민간 기관의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전반적인 국가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민간기관의 경우 시험의 공정성, 신뢰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도도부현공안위원회가 행하는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을 보는 방법이 있고, 국가공안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지정강습을 수료하고 도도부현공안위원회가 행하는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을 면제받아 수검하는 방법이 있다. 검정종별 가운데 교통유도경비, 핵연료물질운반경비, 귀중품운반경비에 대하여는 사단법인 전국경비업협회가 행하는 특별강습을 국가공안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지정강습으로서 실시되고 있다⁹⁾.

미국의 민간경비자격위원회(Private Security Advisory Council)는 1973년에 발표된 「미국의 민간경비」(Private Police in the United States: Findings

and Recommendation)에서 주정부의 민간경비기관은 모든 분야의 민간경비관련 근로자들에게 최소한 어떤 수준의 개인적 민간경비원 전문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훈련과목, 훈련시간 등의 훈련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버몬트 주는 무장경비원들에게 66시간의 교육과 필기시험, 그리고 무기소지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델라웨어 주는 모든 사설형사와 탐정들에게도 법적으로 총기류 훈련을 받게 하고, 매년 자격증을 재교부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일리노이주 경비업법은 총기류를 다루는 모든 경비원들에게 총기류 취득자격증(Firearms Certification)을 요구하며, 20시간의 기본적인 훈련과정에 덧붙여 담당부서에서 승인한 20시간의 총기류 훈련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¹⁰⁾.

경비업법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신입교육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협회, 경찰교육기관, 경비업무 관련학과가 개설된 대학 등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실시하고, 직무교육은 경비업자가 실시한다.

주관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평가 시 전국단위로 여러 가지 기자재가 동원되어야 하므로, 기존 시설 및 시험 운용 능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 실정에서는 경호·경비관련 학과의 교육시설을 충분히 활용하여 교육훈련 주무기관으로 선정되어야 하겠다.

3.7. 취득자 우대방안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우대방안으로는 다음의 Table 11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자격제도의 도입은 기존 경호·경비인력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Table 11. Privileged Treatment plan for the Acquisitor

- ① 신설되어질 자격증 중 취득자격증 외에 추가 취득할 경우 검정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예: 1차시험 면제)
- ② 소정의 자격검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도 검정기준, 과목, 응시자격, 경력 등이 자격제도의 기준에 상당할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자격증을 지급할 수 있다.(경력자우대)
- ③ 자격증 소지자가 석사나 박사 등의 고등교육기관에 민간경호·경비관련 전공으로 진학하고자 할 경우 우대하여 선발할 수 있다. (산학협력)
- ④ 민간경비의 업무분야별로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한하여 직무를 행할 수 있다.

자격증 시험 대상을 젊고 유능한 고학력 출신에 맞추기에는 한계가 있다. 즉, 장기적으로는 민간경비산업이 선진국에서와 같이 가장 인기 있는 비교우위산업이 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현실적으로는 일부 규모가 큰 경비회사에서만 젊고 유능한 대졸출신을 채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전반적인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인식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자격증시험의 실시에 있어서도 단기적으로는 기존경비인력의 연령에 맞추어 실시하되, 가장 최적의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응시연령을 만35세 이하로 낮추어서 젊은 경비인력을 제공하는 방법을 시행할 수 있다.

4. 결 론

경호 및 경비업에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경호원과 경비원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경력인정과 시험에 의해 자격이 주어지더라도 실무수습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만 경호원, 경비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격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이들의 수를 조절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자질향상을 위해서 선발과정에 의해 자격을 취득할 때는 6개월 이상의 실무 수습 이수를 의무화하고,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법제화해야 한다. 자격증과 신변보호에 관한 법률 제도 및 보험관계가 논의되어야 한다.

전문경비원자격제도 도입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교육과목, 자료 및 방법론을 포함하는 적절한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 민간경비관련기관은 모든 종류의 경비업관련 근무자들에게 최소한의 수준을 갖춘 교육훈련프로그램(자질, 교육과목, 교육시간 등)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경호학학사와 같은 적절한 대학교육의 수료가 최소 경력요구사항에 대한 대체조건으로 사용되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 1) 한국경비협회, 총무부, 2004.12.
- 2) 경비업법 제10조.
- 3) 박준석, “경호학의 학문적 정립을 위한 발전 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 제7회 학술발표회, 2001.
- 4) 박병식, “민간경비론”, 법률출판사, 서울, p. 56, 1996.
- 5) 최중태, “민간차원의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제2호, p. 308, 2002.
- 6) 박동균, “한국 경비지도사제도의 발전방향안”, 경호경비연구, 제5호, pp. 135~153, 2002.
- 7) “국가기술자격검정통계연보”, 한국산업인력공단, 2002.
- 8) 경비업법 제2조.
- 9) “警備教育教本(基本教育編)”, 日本全國警備業協會, pp. 32~35, 1993.
- 10) Cunningham William C. and Taylor Todd H., “The Hallcrest Report : Private Security and Police in America”, Portland, OR : Chancellor Press, 1985.